

2022년도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안내



경상남도과 시·군이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하여
저소득층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 도내 초·중·고 학생

선정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

(단위 : 원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월소득인정액	1,361,368	2,282,060	2,936,291	3,584,756	4,217,161	4,834,903

※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,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.
즉, 소득인정액 = 월소득 평가액(실제소득) +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- 각종 공제액

신청기간 2022. 2. 17. ~ 7. 29.

신청자 학생을 법률상·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

신청장소 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
온라인 신청(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: www.gnedu.kr)

신청서류 「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서」와 「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」

※ 신청서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2021년 대상자 중 현재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)는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 밖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.

지원내용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지급(구. 여민동락카드)

- 연간 10만원(초중고 동일)을 승인된 가맹점(지역서점, 온라인가맹점)에서 자율 사용
-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,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
- 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 시 일괄 충전

Q&A 2022년도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(바우처사업)



누가 받나요?

기준 중위소득 70%이하 즉,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58.4만원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언제, 어디서 신청하나요?

2022. 2. 17.(목) ~ 7. 29.(금)까지
학생의 보호자

- 보호자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·제출하거나
-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(www.gnedu.kr) 접속,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.



2021년 대상자도 신청해야 하나요?

- 2021년 대상자 중('22년 현재) 중위소득 70% 이하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, 그 외 대상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신청 필요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


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?

- 학생 보호자 가구의 소득, 재산, 금융 등 조사를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,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.



카드를 어디서 발급 받나요?

- 선정통보를 받으신 후 학생 보호자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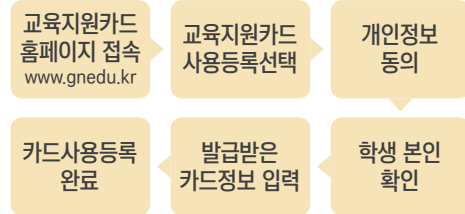


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(바우처사업) 지원 외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?

-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,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지원,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,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각 사업별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.

카드 발급 후 사용등록을 해야 하나요?

-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(www.gnedu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

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- 선정된 학생에게 연간 10만원의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하며, 이 카드로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,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자율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



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?

2022. 10. 31.(월)까지

-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여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.



2021년 대상자인데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?

- 기존 보유카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



부정사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-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, 양도 또는 판매 (시도한 경우 포함)
- 카드 선결제 후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
 - ※ 부정사용의 경우 사용액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대상자 선정 제외



신청문의

창원시 225-2384
진주시 749-8323
통영시 650-4742
사천시 831-2586

김해시 330-3177
밀양시 359-6004
거제시 639-3855
양산시 392-2576

의령군 570-2145
함안군 580-2055
창녕군 530-1226
고성군 670-2613

남해군 860-8644
하동군 880-2183
산청군 970-6122
함양군 960-4643

거창군 940-8813
합천군 930-3167